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. 4. 14 선고 2020가단6797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1. 2. 17.

판 결 선 고 2021. 4. 14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94,068,38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와 원고는 모녀관계로, 피고의 남편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D 소유의 양산시 E 답 2347㎡ 지상에 펜션을 지어 함께 운영하기로 합의하였고, D은 2008. 4. 22. 위 토지를 분할하여 그 중 양산시 F 답 900㎡(이하 'F 토지'라 하고, 위 양산시 E 답 2347㎡ 중 분할하고 남은 나머지 대 973㎡를 'E 토지'라 한다)를 원고에게 증여하고,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.

나. 원고는 D 명의로 대출받은 돈 1억 5천만 원과 피고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원, E 토지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5천만 원, D으로부터 대여한 돈 1억 원 등으로 위 E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1, 2 건물(이하 '이 사건 각 건물'이라 한다)을 건축하여 2009. 12. 3. 위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, F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3 건물을 건축하여 2009. 11. 26.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다. 피고는 2009. 7. 20. 'G'라는 상호로 펜션 사업자 등록을 하고, 2009. 12. 22.

양산시장으로부터 농어촌민박사업자 지정을 받았다.

라.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원고를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16240호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법원 2014가합3821호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. 위 사건의 항소심{2015나56734(본소), 2015나56741(반소)}에서 '피고(이 사건에서 원고)는 원고(이 사건에서 피고)에게 이 사건 각 건물을 각 인도하고, 68,681,6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하라. 피고(이 사건에서 원고)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'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, 위 판결은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{2018다201375(본소), 2018다201382(반소)} 그대로 확정되었다(이하 '관련 판결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다. 원고는 2009. 4.경부터 2010. 6.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192,750,000원을

지급함으로써 위 건축비용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였다.

그런데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못하게 되었고,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해주게 되었는데, 결국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192,750,000원을 부당이득하게 되었다.

한편, 관련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98,681,616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므로,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공제하고 남은 94,068,384원(= 192,750,000원 - 98,681,616원)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

3. 판단

살피건대,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전세금 1억 원 등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고,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비용으로 피고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하여 2009. 4.경부터 2010. 6.경까지 합계 192,750,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황성광

건물의 표시

1. 경상남도 양산시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2층

단독주택(다가구)

1층 84.3 m² 2층 54.91 m²

2. 경상남도 양산시 동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 단층

단독주택(다가구) 90 m²

3. 경상남도 양산시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지붕

지상2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

1층 141.38 m²

2층 84.41 m²